

제 240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4.24.)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2
3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4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	30
5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6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7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8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51
9	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7
10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62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4. 19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4. 8.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4. 8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0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4. 19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신영수]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2018. 12. 18.)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내용이 조례에 중복·재기재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범위에서 연가사용 기준 등을 정하여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 공무원의 복무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상위법령에 명시된 조항 삭제
 - 연가계획 및 허가(현행 제19조제5항·제6항)
 - 연가일수의 공제(현행 제20조제1항·제2항) : 연가일수공제 근거를 조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상향 규정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현행 별표 3)
 - 경조사 휴가일수(안 별표 3)
- 2) 연가사용 촉진을 위해 제한근거 삭제(현행 제19조제2항)
- 연가사용을 촉진을 위해 국외여행 등 특별한 경우에만 연가 7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한 조항을 삭제
- 3) 육아시간의 확대 및 운영기준 신설(안 제23조제4항)
-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1일 1시간 사용
 - ⇒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 사용
- 4)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기준 신설(안 제23조제12항)
- 1일 최소 4시간 이상 근무, 시간외근무 명령 불가,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 사용 불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래만]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2018. 12. 18.)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내용이 조례에 중복·재기재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 주요내용은

- 현행 제19조제5항·6항과 현행 제20조제1항·제2항, 현행 별표3은 상위법령에 명시된 조항으로 삭제하였으며
- 현행 제19조제2항은 연가사용 촉진을 위해 제한근거를 삭제하였고

- 안 제23조제4항은 육아시간의 확대 및 운영기준에 대한 사항을
- 안 제23조제12항은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조례로 위임된 범위에서 연가사용 기준 등을 정하여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 공무원의 복무 제도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과 제17조 앞의 “제3장 휴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본직기관의 장”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직기관의 장”을 “군수”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과전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을 “군수”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9조와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제20조(연가일수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제21조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군수는 공무원”으로 “제20조제4항”을 “제20조제2항”으로 “공제하는”을 “빼는 병가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병가일이”를 “병가일수가”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붙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⑫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1일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을 삭제하고 별표 4를 별표 3으로 하며 별표 3(중전 별표 4)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장 총칙</p> <p>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u>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u>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p> <p>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u>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u></p> <p>제10조(파견근무) ① (생략)</p> <p>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u>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u></p> <p>제3장 휴가</p> <p>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u>「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u></p> <p>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u>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시</u></p>	<p><삭 제> 통상 조문수가 30개 이상일 경우 장으로 나누어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삭제</p> <p>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u>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는다.</u>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p> <p>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u>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u></p> <p>제10조(파견근무) ① (생략)</p> <p>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u>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u></p> <p><삭 제></p> <p>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u>「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u> ▷ 별표 3 제2호는 법령 재기재에 해당하여 불필요한 규정이고, 별표 3 제1호만 위임되어 조례로 정할 사항이므로 별표 3에서 규정하지 않고 본칙에서 직접규정하는 방식으로 함(별표 3 삭제)</p> <p>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u>군수는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u></p>

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으면 공무수행을 위해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또는 공무상 질병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제20조(연가일수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

·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으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개월-해당 연도 휴직기간(개월)/12개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산입하지 않는다.

1.~2. (생략)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연가일수의 공제)조항 신설(2018. 12. 18.)로 법령 재기재사항 삭제

제21조(병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일수는 산입하지 않는다.

1.~2. (생략)

② 군수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23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항 삭제 2015.6.10.)

③ (생략)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공무원인 경우 한 사람만 해당한다.

⑤~⑪ (생략)

<신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⑤~⑪ (현행과 같음)

⑫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1일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삭제>▷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의견18-0025 등 참조)이므로, 삭제함.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때 원경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 ▷ 제1조 목적조항에서 이 조례는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조례 본칙 내용도 법령 재기재사항 삭제하였으므로 위임조례 취지에 맞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규정 중복·재기재사항은 삭제함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4. 19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4. 8.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4. 8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0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4. 19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과 신영수]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자치분권협회의 법적 위임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거창군의 자치분권 실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동시에 정하고 있음을 규정함
- 2)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 3)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정함(안 제3조)

- 3년마다 추진계획 수립·시행
- 자치분권 목표와 추진방향,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과 세부 실행계획,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등
- 4) 정책과제의 추진, 군민참여의 확대를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5) 자치분권협의회의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제11조)
 - 위임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제2항
 - 기능 :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
 - 구성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각 분야별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자치분권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위원
 - 임기는 2년
 - 그 밖에 위원 해촉, 위원장 직무, 협의회 운영, 간사를 정함
- 6)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경비 지원을 규정함(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래민]

본 조례안은 거창군의 자치분권 실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를,
- 안 제3조 ~ 안 제5조에서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과 정책과제의 추진 및 군민참여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 안 제6조 ~ 안제11조에서는 자치분권협의회의에 대한 사항을
- 안 제12조에서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경비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자치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고,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 참여가 우선적이어야 할 것이며, 주민 참여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치분권 촉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활동체계를 구축,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임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원체계가 마련됨으로써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음.

※ 경남도내 조례제정 현황 : 9개 자치단체

- 경상남도, 창원, 밀양, 사천, 진주, 통영, 고성, 의령, 하동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의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의 자치역량 강화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와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과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시민사회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국가와 경상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제5조(군민참여의 확대) 군수는 자치분권을 위한 군민의 각종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등 군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기능)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 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거창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거창군의회, 관계 공무원 등 각 분야별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자치분권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③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토론회, 학술활동
- 2. 자치분권 홍보 및 활성화 추진,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사업, 각종 시범사업
-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제12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토론회, 학술활동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사업, 각종 시범사업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행정과장 신 영 수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4. 19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4. 8.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4. 8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0회(임사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4. 19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담당 신영수]

가. 제안이유

법무부 권고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는 국가가 구축·운영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제 하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무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체계적·통일적으로 지원을 수행함에 따라 그 내용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가. 불필요한 용어 정의 정비(안 제2조)
- 2) 지역치안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장 추가 (안 제7조제2항제4호)
- 3) 협의회의 정기회 개최 횟수 변경(안 제10조제2항)
 - 분기별 1회 ⇒ 반기별 1회

- 4) 민간단체 지원사업 구체화함(안 제15조)
- 5)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되는 사업과 중복되는 범죄피해 지원조항 삭제(현행 제17조,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래만]

본 조례는 법무부 권고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은 국가주도 사업으로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안을 통해 지원함에 따라 삭제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 주요내용은

- 안 제2조에서는 불필요한 용어 정의를 정비하고,
- 안 제7조제2항제4호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장을 추가하였으며
-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협의회의 정기회 개최 횟수를 변경,
- 안 제15조에서는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구체화 하고,
- 현행 제17조·제18조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되는 사업과 중복되는 범죄피해 지원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통상 법령체계는 조문이 30개 이상일 경우 장으로 나누어 구분하는 것이 원칙으로 본 조례의 제1장 총칙, 제2장 지역치안협의회, 제3장 민간단체 및 범죄행위 피해자 지원 등을 삭제 정비하고, 불필요한 용어 정의를 정비하였으며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구체화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되는 사업과 중복되는 범죄피해 지원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 제5조 앞의 “제2항 지역치안협의회”, 제15조 앞의 “제3장 민간단체 및 범죄행위 피해자 지원 등”을 삭제한다.

제1조 중 “범죄행위 피해자 및 민간단체”를 “민간단체”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약자"란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으로 거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설치 및 기능)”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안전보호 및 범죄행위 피해자”를 “안전보호”로 한다.

제7조제2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 제4호) 중 “협의회의 의장이”를 “군수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장

제8조제2항 중 “의장은”을 “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분기별 1회”를 “반기별 1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실무위원회”를 “실무협의회”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6조를 제15조로 하며 제15조(종전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민간단체 지원)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및 우범지역 환경개선과 범죄예방 사업
2. 각종 폭력예방과 안전에 대한 교육과 전문상담 사업
3.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종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거창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u>범죄행위 피해자 및 민간단체의 참여·활동을 지원함</u>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사회적 약자</u>”란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2. “<u>범죄행위</u>”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u>범죄예방 봉사활동</u>”이란 민간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u>민간단체</u>”란 범죄취약지역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p>제3조(군의 책무) ① 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과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p> <p>② 군은 민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p>	<p><삭 제>▷ 장 삭제: 장은 30조문 이상일 경우 장으로 나누어 구분</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거창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u>민간단체의 참여·활동을 지원함</u>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사회적 약자</u>”란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으로 거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p> <p>▷(제2호 범죄행위) 범죄피해 보호법에도 정의되지 않은 용어이며 정의 불필요</p> <p>▷(제3호 봉사활동) 누구나 알고있는 용어는 정의 불필요</p> <p>▷(제4호 민간단체)제15조 민간단체 요건으로 충분히 설명됨</p> <p>제3조(군의 책무) 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과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p> <p><삭 제></p>

범죄행위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치안협의회

제5조(설치 및 기능)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 발생 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거나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1.~4. (현행과 같음)
5.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 및 범죄행위 피해자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생략)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거창경찰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거창군의회 의장
2.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3. 거창소방서장

<신설>

4.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삭제>

제5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기능)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 발생 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거나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1.~4. (현행과 같음)
5.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제17조 범죄피해 지원규정 삭제에 따라 삭제
6. (현행과 같음)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거창경찰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거창군의회 의장
2.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3. 거창소방서장

4.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장

5.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생략)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생략)

<신 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제13조(필요경비 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민간단체 및 범죄행위 피해자 지원 등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p209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편의상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는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p217 회의록 작성주체는 군수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필요경비 지원 등)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하면 되므로 삭제

<삭 제>

제15조(민간단체의 요건)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4. (생략)

제16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7조(범죄피해 지원) ① 군수는 범죄행위로 피해(살인, 성범죄 피해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입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00만원 이내의 지원금(장례비와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에 한정한다.

③ 지원대상자 선정은 군수 또는 거창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추천서에 따라 추천하면 협의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제16조(민간단체의 요건) 제1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4. (현행과 같음)

제15조(민간단체 지원) 군수는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및 우범지역 환경개선과 범죄예방 사업
2. 각종 폭력예방과 안전에 대한 교육과 전문상담 사업
3.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삭 제>

▷ 법무부 권고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은 국가주도 사업으로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통해 지원토록 함에 따라 삭제

제18조(지원금의 지원 제외) 군수는 제17조에서 정한 지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없이 사무의 집행에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제15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및 우범지역 환경개선과 범죄예방 사업
2. 각종 폭력예방과 안전에 대한 교육과 전문상담 사업
3.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 중 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2019년도 예산 5천만원 미만임

나. 2019년도 본예산 : 37.8백만원

- 1)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 15백만원
- 2)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일반운영비) : 17.8백만원
- 3)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범죄피해자 지원) : 5백만원

작 성 자 행정과장 신영수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4. 19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4. 8.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4. 8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0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4. 19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신영수]

- 가. 제안이유
지역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례를 제정·시행 하였으나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내용을 중복 재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래만]

본 조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내용을 중복 재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폐지하려는 조례로서,

○ 주요내용은

-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일반론적으로 자치법규로서 대외적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법률이 개정이나 폐지되었을 때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기에(자치법규 의견 제시 15-0244)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참고자료

1. 조례와 법령 비교검토
2. 경남도내 조례폐지 : 사천시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4. 19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4. 8.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4. 8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0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4. 19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이은주]

가.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2019. 7. 1.)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중증/경증)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정비함.

나. 주요내용

- 1)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정비(안 제2조)
 - 감면대상 :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 장애정도 규정 신설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감면기한 연장 : 2021. 12. 31.⇒ 2022. 6. 30.

2)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한 명문화(안 제3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감면 기한 명시함 : 2020. 12. 3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래만]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시행(2019. 7. 1.)으로 장애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 주요내용은

- 안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 안 제3조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명문화 하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2019. 7. 1부터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중증/경증)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명문화 하는 개정 조례로서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을 제3항·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일 것
2.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고, 2019. 6. 30.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2조제3항(중전 제2항) 중 “이전등록하고”를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제3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본문에 따른”을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p>	<p>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일 것 2.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일 것 <p>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고, 2019. 6. 30.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p>
<p><신 설></p>	

<p>② 장애인 <u>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고</u>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③ <u>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u></p> <p>제3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 <u>본문에 따른</u>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p>	<p>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p> <p>1. <u>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u></p> <p>2. <u>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u></p> <p>③ 장애인 <u>대체취득 [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④ <u>제1항·제3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u></p> <p>제3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 <u>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u>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2021년부터 법으로 감면율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 감면기한 명시하여 예측가능하게 함</p>
---	--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4. 19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4. 8.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4. 8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0회(임사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4. 19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가. 제안이유

관광객 유치지원 경쟁에서 지리적 약점을 보완하고자 관광객 유치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제2조)
- 2) 관광객 유치지원 기준 확대(안 제4조)
 - 내외국인 관광객 단체를 군내 숙박시설에 알선하여 투숙한 경우
⇒ 국내외 관광객 유치
 -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위임
- 3) 불필요한 규정 정비(현행 제10조제2항,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래만]

본 조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광객 유치지원 경쟁에서 지리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광객 유치지원 사업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조례임을 명확히 하고
- 안 제4조에서는 관광객 유치지원 기준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현행 제10조제2항, 제12조에서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상위법령 위임범위에 위배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지므로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위임자치법규를 명확히 표시하고

내외국인 관광객 단체를 군내 숙박시설에 알선하여 투숙한 경우(1박2일)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조례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정과 법령 체계를 정비하는 개정 조례로서 형식이나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조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중 “다른 법령이나 조례”를 “다른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행정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군”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 지원에 따른 규모”를 “재정지원에 따른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제9조 중 “관광사업자 단체, 관련법인 또는 기관”을 “관광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군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관광진흥법</u>」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목적규정에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상위법령 위임 범위에 위배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지므로 상위법령 위임을 받아 정하는 위임자치법규임을 명확히 표시 「법제처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 P79)</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내국인 관광객"이란 <u>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u></p> <p>2. "외국인 관광객"란 <u>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u></p> <p>3. "관광사업자"란 「<u>관광진흥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p> <p>4. "관광사업자 단체"란 「<u>관광진흥법</u>」 제45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p> <p>5. "숙박시설"이란 「<u>관광진흥법</u>」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광숙박업소와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펜션업 및 한옥체험업, 「<u>공중위생관리법</u>」에 따라 신고·등록한 숙박업소, 「<u>청소년활동진흥법</u>」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및 유스호스텔, 「<u>농어촌정비법</u>」에 따른 농어촌민박, 「<u>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u>」에 따른 자연휴양림시설을 말한다.</p>	<p><삭 제></p> <p>(제1호)▷ 제4조제1항제1호 삭제로 조례에 안 나오는 용어임. 규칙 별표 이동 기술</p> <p>(제2호)▷ 제4조제1항제1호 삭제로 조례에 안 나오는 용어임. 규칙 별표 이동 기술</p> <p>(제3호)▷ 법령 용어 정의는 위임조례에 그대로 적용되므로 규정 불필요</p> <p>(제4호)▷ 제9조에서 삭제함에 따라 삭제</p> <p>(제5호)▷ 제4조제1항제1호 삭제로 조례에 안 나오는 용어임. 규칙 별표 이동 기술</p>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 단체를 군내 숙박 시설에 알선하여 투숙한 경우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의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예산 지원에 따른 규모,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 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대상업무) ① 제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관광진흥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당연히 따라야 하므로 삭제

제4조(관광객 유치지원)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2.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의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재정지원에 따른 대상,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대상업무) 제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7. (현행과 같음)

<삭 제>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됨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법제처 의견18-0025 등 참조)이므로, 삭제함.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4. 19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4. 8.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4. 8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0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4. 19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가. 제안이유

수승대관광지 내 노지에 있는 일반텐트 이용료 규정을 삭제하여 미등록 야영지에서 야영행위를 근절하고, 부당한 이용료 징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제안이유

- 1) 야영장 이용료에서 일반텐트(노지) 규정 삭제(안 별표 1 나목)

(단위: 원)

구분	일반텐트(노지)	야영테크	오토캠핑장	비고
이용료	6,000	10,000	25,000	1박 기준

- 2) 야영장 이용권 서식 삭제(안 별지 제2호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래만]

본 조례는 수승대관광지내 이용료 징수규정을 정비하여 야영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 등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 주요내용은

- 안 별표1 나목에서 일반텐트(노지) 이용료를 삭제하고
- 안 별지 제2호 서식 야영장 이용권 서식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야영장업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수승대 내 관광객 일반텐트(노지) 이용료 징수시 야영장업을 등록하고 징수를 하여야 함에도 미등록 징수로 상부기관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써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나목 중 “일반텐트(노지)”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삭 제></u>▷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의견18-0025 등 참조)이므로, 삭제함.</p>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4. 19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4. 8.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4. 8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0회(임사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4. 19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복나눔과 김득환]

가. 제안이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조성과 권리증진을 도모하자 함.

나. 주요내용

- 1)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해촉 사유를 정함(안 제2조·제3조)
- 3) 위원장 직무와 그 대행을 정함(안 제4조)
- 4) 회의 운영원칙과 간사를 정함(안 제5조·제6조)

- 5)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우선 보호조치와 자료제출 요구 등을 정함(안 제7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래만]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본칙 총 9조와 부칙의 구성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하고
- 안 제2조 ~ 제3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해촉사유를
- 안 제4조에서는 위원장 직무와 그 대행 사항을
- 안 제5조 ~ 제6조에서는 회의 운영원칙과 간사를 정하는 사항을
- 안 제7조 ~ 제8조에서는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우선 보호조치와 자료제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조성과 권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척·기피·회피) 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3조(해촉)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우선 조치)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와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 보호 조치를 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자료 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과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나. 관련 조문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 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④ (생략)

2. 미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작성자 : 행복나눔과장 김 득 환

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4. 19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4. 8.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4. 8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0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4. 19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조춘화]

가. 제안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등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지역보건법」 위임에 따른 위임조례와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자치조례가 통합되어 있음을 명확히 함(안 제명, 제1조)
 - 조례 적용대상 :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와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 제명 : 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 ⇒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목적 :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진료비 및 수수료를 정함(제2조)

- 진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명세서 기준 따른다.
- 수수료 : 현행) 진료비가 포함된 수수료 규정
 변경) 수수료만 알기 쉽게 규정함
- 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를 정함(제3조)
- 진료비등의 납부방법을 정함(제4조)
- 진료비등의 반환 등을 정함(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래만]

본 조례안은 현행 건강진단서,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운전면허 신체·적성검사 등은 수수료와 진료비를 포함한 수가가 명시되어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따라 진료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진료비를 적용할 수 없어 진료비와 수수료를 구분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진료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명과 제1조에서는 「지역보건법」 위임에 따른 위임조례와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자치조례가 통합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고

- 안 제2조에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 정하는 사항이
- 안 제3조 ~ 제5조에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 진료비 등의 납부방법 및 반환 등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위임사항과 법령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조례로서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 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①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

②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 또는 검사 등을 받은 자로부터 진료 등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진단서 및 일반진단서: 건당 500원
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같은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3. 이미 발급된 진단서 등의 재발급: 건당 300원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진료비 및 수수료와 보건진료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진료비(이하 “진료비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응급의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 진료와 예방접종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 및 방문 진료
6.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7. 국가, 경상남도 또는 거창군이 개최하는 행사의 의료 지원
8.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9.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11. 공공기관이 공무상 필요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12.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13.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4조(진료비등의 납부방법) 진료비등은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 받은 날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한다.

제5조(진료비등의 반환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는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진료비등을 반환해야 한다.
②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등을 면제받은 사람에게 그 면제받은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 4. 19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4. 8.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4. 8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0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4. 19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 이은주]

- 가. 제안이유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형평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으로 고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고시지역 : 2017.11.30. 현재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 2) 대상면적 : 31.90km²
- 3) 읍면동별 적용대상지역

읍면동	면적(m ²)	적용대상지역
합 계	31,906,464	거창읍·웅양면·마리면·남상면·가조면 일부지역

거창읍	26,767,975	상림리·중앙리·대동리·대평리·김천리·송정리·장팔리·정장리·동변리·서변리·가지리·양평리·학리 일부지역
용양면	2,773,000	죽림리·동호리·산포리·노현리 일부지역
마리면	455,000	하고리 일부지역
남상면	1,016,754	대산리·월평리 일부지역
가조면	893,735	대초리·일부리·마상리·수월리 일부지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래만]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 고시 제2017 - 482호(2017. 11. 30) 도시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고시지역과 대상면적 및 읍면동별 적용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방세법」 제112조, 거창군 군세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